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 정비 〉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16384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발 의 일 : 2026. 1. 28.
3. 회 부 일 : 2025. 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각각 90일 및 60일로 정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그 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함)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및 제16항).

현행	개정안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5.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생략) ② ~ ④ (생략)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① ----- ----- ----- ----- ----- ----- -----.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협의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제32조¹⁾에 따르면 보호대상자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내지 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각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각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화 내지 통일화를 도모하려는 것임.²⁾

이의신청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의신청 기한’이라 함) 및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당사자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결과통지 기한’이라 함)이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되었더라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상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2) 법제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해 이의신청 관련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 중임(참고자료)

<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관련 규정 >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이의신청의 기한 및 결과통지 기한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각각 90일 및 60일로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도 현행 개별법상 특례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내용적 변화는 없음.³⁾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

이는 일반 국민보다 행정업무 등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상 30일보다 긴 현행 90일로 유지
하려는 것이고, 이의신청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신변보
호 연장 등은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부처
와의 충분한 심의를 위해 결과통지 기간을 「행정기본법」상 14일
보다 긴 현행 60일로 유지하려는 것이어서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
호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이의신청 현황 >

연도	거주지 신변보호			보호결정		
	접수	수용	불수용	접수	수용	불수용
2021	—	—	—	—	—	—
2022	—	—	—	2	1	1
2023	—	—	—	3	—	3
2024	7	7	—	1	—	1
2025	6	2	4	—	—	—

□ 한편,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통지 기한’이 법률에 명
시되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
정을 통해 법률로 상향시키는 것은 이의신청 관련 조항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여지나,

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
인 것으로 본다.

- 개정안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기한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규정까지도 법률로 상향하고 있는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용을 간주하는 규정의 입법례는 개정안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려움.
-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에 절차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규정할 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필요성 및 심의를 위한 기간 소요 등을 감안하는 동시에 법체계의 정합성 및 행정절차의 체계성과 다른 법률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된 「행정기본법」 제36조⁴⁾를 준용할 경우 어떤 법률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제외하고 준용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법률에서는 그 단서를 포함한 해당 조 전체를 준용하기도 하는 바,

4)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6조(이의신청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그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기간 결정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지 혹은 그 적용을 배제할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개별법에서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을 뿐, ‘예외적 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본래 ‘예외적 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자 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개별법상 ‘예외적 기간 연장’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된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예외적 기간 연장’에 대한 일반규정인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개정안의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간 경과 시 이의

를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으나, 개정안의 경우 먼저 간주 규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간주 규정을 들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법률과 같이 연장 규정을 들지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36조 또는 단서 준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각각 현행 90일 및 60일로 유지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267

※ 참고자료

< 개정대상 법령 및 개정내용 >

	법령	내용	소관부처
1	원자력 진흥법 제13조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규정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규정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 규정	교육부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규정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 규정	교육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규정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 규정	통일부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규정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규정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 규정	산업통상부
7	의료법 제58조의5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규정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 규정	보건복지부
8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의2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규정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 규정	해양수산부
9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8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	국토교통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	행정안전부

	법령	내용	소관부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4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	교육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	교육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	해양수산부